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서 울 고 등 법 원

춘 천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춘천)2015누467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군수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450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21.
판 결 선 고	2016. 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8. 2.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추징처분과, 2012. 8. 8.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란 기재 각 해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금액의 추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7, 8행의 "2009. 1.부터"부터 "각 실시하였고,"까지를 삭제하고, 제10면 제16행의 "133,854㎡" 다음에 "별지 1 기재 1번 부동산"을, 제12면 제4행 "3) [redacted]탄좌건물" 뒤에 "(별지 1 기재 20번 부동산)"을, 제1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피고는 우선, 원고는 늦어도 2004. 11. 18. 피고와 [redacted]탄좌건물 및 부지에 대한 개발회의를 할 때부터 [redacted]탄좌건물을 이용하여 탄광체험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탄광문화관광촌의 조성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 15, 17, 21호증, 을 제31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6, 13호증, 을 제37, 40, 4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06. 10.경 작성한 계획서에 기재한 사업추진일정표에는 2006. 10. 원고를 석탄역사체험장의 사업주체로 결정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가 장차 어떻게 진행할지 스스로 계획을 세운 내용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위 시점까지는 석탄역사체험장의 건립주체가 확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06. 10. 23. 원고에게 동원탄좌건물에 대한 원고의 개발계획 및 피고가 그 일대를 이용하여 석탄역사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묻기도 하였으므로, 이 시점에서도 원고가 석탄역사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닌 점, ③ 피고가 2007. 1. 15.자 공문에서 석탄역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체험관의 조성을 원고에게 요구하기 전까지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석탄역사체험관을 건립할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언급한 자료는 없는 점, ④ 만약 피고의 2007. 1. 15.자 공문 이전부터 원고가 석탄역사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었다면, 피고가 2005. 12. 29. [redacted]탄좌부지를 원고에게 이전하면서도 그 전에 이미 주식회사 [redacted]으로부터 기부받아 소유하고 있던 [redacted]탄좌건물은 2008. 11. 13.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이전한 정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7. 1. 15. 무렵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redacted]탄좌건물을 사용하여 석탄역사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이전까지는 석탄역사체험관을 포함하여 탄광문화관광촌의 조성을 시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를 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문

판사 홍준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판사 이희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별지 1]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처분 내역

(단위: 원)

구분	취득일자	부동산	면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계
			토지	건물					
1	2008. 11. 13	[redacted]		10,388.65	61,248,940	6,124,880	40,560,850	7,474,910	115,429,580
2	2008. 10. 8.		118.53		853,200	85,300	853,190	157,220	1,948,910
3	2008. 10. 8.		118.53		853,190	85,300	853,190	157,220	1,948,900
4	2008. 10. 8.		237.07		1,706,420	170,630	1,706,420	314,460	3,897,930
5	2008. 10. 8.		296.33		2,133,040	213,290	2,133,040	393,080	4,872,450
6	2008. 10. 8.		217.00		1,265,630	126,550	1,265,630	236,940	2,896,750
7	2008. 9. 30.		110.00	29.16	1,117,850	111,780	1,117,850	206,060	2,553,540
8	2008. 6. 30.		118.00		687,890	68,770	687,890	127,040	1,571,590
9	2008. 2. 2.		2,500.00		2,498,610	249,860	2,498,610	462,720	5,709,800
10	2007.12.27.		124.00		804,070	80,390	804,070	148,990	1,837,520
11	2007.11.30.		219.00		1,395,850	139,570	1,395,850	258,790	3,190,060
12	2007. 7. 30.		116.00		1,405,290	140,510	1,405,290	261,070	3,212,160
13	2007. 8. 21.		112.00		439,630	43,960	439,630	81,650	1,004,87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14	2007. 5. 22.	[redacted]	126.00		850,690	85,050	850,690	156,200	1,944,630
15	2007. 4. 24.		2,946.00		868,480	86,830	868,480	161,580	1,985,370
16	2007. 2. 5.		78.00		2,524,140	252,400	2,524,140	470,060	5,770,740
17	2006. 11. 3.		132.00		864,400	86,430	864,400	161,250	1,976,480
18	2006. 9. 25.		170.00		2,800,660	280,060	2,800,660	522,780	6,404,160
19	2006. 7. 26.		113.00		1,536,290	153,610	1,536,290	287,000	3,513,190
20	2005.12.29.		133,854.00		312,338,650	31,233,850	312,338,650	58,515,820	714,426,970
21	2005. 9. 26.		37.74		684,360	68,410	684,360	128,350	1,565,480
22	2005. 9. 26.		112.00	73.99	1,495,720	149,550	1,495,720	280,530	3,421,520
23	2005. 9. 26.		34.68		1,260,000	126,000	1,260,000	236,340	2,882,340
24	2005. 3. 18.		40.60		847,310	84,710	847,310	159,280	1,938,610
25	2005. 1. 19.		26.21		1,079,990	107,990	1,079,990	203,160	2,471,130
계									898,414,6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별지 2]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 추징처분 내역

구분	부동산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계
1	주택 [redacted] 2008 년분)	5,300	1,060		6,360
2	주택 [redacted] 2009 년분)	5,250	1,050		6,300
3	주택 [redacted] 2010 년분)	5,230	1,040		6,270
4	주택 [redacted] 2011 년분)	5,030	1,010		6,040
5	주택 [redacted] 2008 년분)	5,830	1,160		6,990
6	주택 [redacted] 2009 년분)	5,830	1,160		6,990
7	주택 [redacted] 2010 년분)	5,830	1,160		6,990
8	주택 [redacted] 2011 년분)	5,660	990		6,650
9	주택 [redacted] 2008 년분)	6,210	1,240		7,450
10	주택 [redacted] 2009 년분)	6,190	1,230		7,420
11	주택 [redacted] 2010 년분)	6,220	1,240		7,460
12	주택 [redacted] 2011 년분)	6,410	1,270		7,680
13	주택 [redacted] 2008 년분)	7,920	1,580		9,500
14	주택 [redacted] 2009 년분)	7,910	1,580		9,490
15	주택 [redacted] 2010 년분)	7,930	1,580		9,510
16	주택 [redacted] 2011 년분)	8,160	1,630		9,790
17	주택 [redacted] 2008 년분)	5,210	1,040		6,250
18	주택 [redacted] 2009 년분)	4,990	990		5,980
19	주택 [redacted] 2010 년분)	5,110	1,020		6,130
20	주택 [redacted] 2011 년분)	7,230	1,070		8,300
21	주택 [redacted] 2008 년분)	8,310	1,660		9,970
22	주택 [redacted] 2009 년분)	6,780	1,350	4,160	12,290
23	주택 [redacted] 2010 년분)	6,520	1,300	4,370	12,190
24	주택 [redacted] 2011 년분)	9,460	1,010		10,470
25	주택 [redacted] 2008 년분)	5,280	1,050		6,330
26	주택 [redacted] 2009 년분)	4,590	910		5,500
27	주택 [redacted] 2010 년분)	4,610	920		5,530
28	주택 [redacted] 2011 년분)	4,690	900		5,590
계		173,690	33,200	8,530	215,420